



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공무원 면접시험,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

- 어학시험 점수도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 -

I. 개요

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.

‘소통·공감, 헌신·열정, 창의·혁신, 윤리·책임’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.

인사혁신처(처장 김승호)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(대통령령)」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

에 맞춰 개선된다.

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,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되는 것이다.

개정된 평정 요소는 ▲소통·공감 ▲헌신·열정 ▲창의·혁신 ▲윤리·책임 등이다.

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된다.

[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]

현 행	⇒	개 정 안
1.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		1. 소통·공감: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
2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		2. 헌신·열정: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
3.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	3. 창의·혁신: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
4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		4. 윤리·책임: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
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		+
		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

다만, 현행 구조화 면접(structured interview)* 방식이나 방법·절차는 유지되며,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이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.

*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후,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

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, 과제·질문 등을 개정·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.

둘째,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(등급)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.

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(2년)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

하는 ‘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’를 시행했다.

셋째,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되고,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·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‘나무의사’ 자격증이 추가된다.

김승호 인사처장은 “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,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II.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

항 목	주요 내용	조 항																					
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(‘24. 1. 1. 시행)	□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선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 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⇒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정 안</td> </tr> <tr> <td>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</td> <td></td> <td>소통·공감</td> </tr> <tr> <td>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</td> <td></td> <td>헌신·열정</td> </tr> <tr> <td>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</td> <td></td> <td>창의·혁신</td> </tr> <tr> <td>예의·품행 및 성실성</td> <td></td> <td>윤리·책임</td> </tr> <tr> <td>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+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</td> </tr> </table>	현 행	⇒	개 정 안	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		소통·공감	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		헌신·열정	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	창의·혁신	예의·품행 및 성실성		윤리·책임	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		+			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	§ 5③ 개정
현 행	⇒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
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		소통·공감																					
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		헌신·열정																					
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	창의·혁신																					
예의·품행 및 성실성		윤리·책임																					
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		+																					
		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																					

<p>시험점수 공동활용 (공포일 시행)</p>	<p>□ 인사처에 등록된 영어검정시험 점수(등급)를 다양한 공공기관, 지방 공기업 채용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□ 필기·실기시험 점수(등급)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 신설 ※ 공무원 시험 실시 기관 → 지자체·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등 포함</p>	<p>§ 34⑥ 개정 § 4⑥ 신설</p>
<p>자격증 소지자 경 채 자율성 확대 (공포일 시행)</p>	<p>□ 자격증 소지자 경채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을 자율적으 로 설정하거나 경력기준 완화 가능 ※ 가축방역관·공직 의사 등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의 유연화</p>	<p>§ 27② 별표 7·8 개정</p>
<p>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(‘24. 1. 1. 시행)</p>	<p>□ 「장애인연금법」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 료 면제</p>	<p>§ 35③ 개정</p>
<p>가산대상 자격증 (나무의사) 추가 (‘25. 1. 1. 시행)</p>	<p>□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‘나무의사*’ 자격증 반영 * 수목 피해 진단·처방 및 예방·치료 활동 담당</p>	<p>별표12 개정</p>